

1. 개정 이유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공무원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64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직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등을 삭제하고, 마약류 관련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상한액을 상향하는 한편, 보상금 산정과 지급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류보상금 지급신청시 송부자료 확대(안 제5조제2항제4호 신설)

- 마약류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추정예상금액의 명확한 확인을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무부에 송부하는 자료에 ‘추징금 집행 예정 대상자 카드’ 등 추징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함으로써 보상금 산정 및 지급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마약류보상금 지급기준에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준을 삭제하고 보상금 지급기준 액수를 상향(안 제14조제1항, 제5항)

- 2022. 12. 11. 개정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직무상 신고 등을 한 공무원’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하위 규정인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에서도 직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사건기준가액 1,000만 원 이상 구간들의

보상금 상한액을 상향(보상금 상한액 최대 5천만원 → 최대 3억원)

하여 대표적인 암수범죄인 마약범죄 신고·제보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다. 보상금·포상금 중복 지급 제한규정 신설(안 제14조제6항)

- 현행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에는 타 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상금·포상금(경찰 검거보상금, 권익위 공익신고포상금 등)과의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중복 지급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보상금의 공정하고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라. 보상금 지급신청 서식 개선(안 별지 제1호 서식)

- 현행 ‘보상금지급신청서’ 서식에 연락처 및 보상금 지급 계좌번호 기재란이 없어 보상금 지급신청인과의 연락 및 보상금 지급에 불편이 있으므로, 서식에 연락처, 지급 계좌번호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대검찰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2. . ~ 2025. 2.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추정금 집행예정 대상자카드 등 추정(예상)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14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건기준가액	보상금 상한액
10억원 이상	3억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억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천만원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천만원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500만원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00만원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제14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급 대상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보상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 그 포상금·보상금 등의 액수가 이 규칙에 따라 지급할 보상금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포상금·보상금 등의 액수가 이 규칙에 따라 지급할 보상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지급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보상금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대상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속						
	직업(직위)						
신청내용	사건개요						
	압수품				수량		
	처벌사항						
	신청인소견						
보상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신청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익명·가명 신청시 기재사항	
※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익명·가명으로 보상금지급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사유 : 확인자 (기관명)장 인	익명·가명신청 검사승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의	→	결 정	→	통보·지급
신청인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법무부 마약류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법무부장관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신청절차) ① (생략) ②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③ (생략)	제5조(신청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 3. (현행과 같음) <u>4. 추정금 집행예정 대상자카드 등 추정(예상)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u>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지급기준) ①보상금은 추정금액과 물수품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이하 “사건기준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사건당 다음의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제14조(지급기준) ①----- ----- ----- ----- ----- ----- ----- -----.

사건기준가액	보상금 상한액	
	공무원	민간인
10억원 이상	1천만원	5천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700만원	3천만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00만원	2천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00만원	1천500만원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200만원	1천만원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00만원	700만원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70만원	500만원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만원	300만원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0만원	100만원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 대상자가 마약류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1인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사건기준가액	보상금 상한액
10억원 이상	<u>3억원</u>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u>2억원</u>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u>1억원</u>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u>5천만원</u>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u>3천만원</u>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u>1천만원</u>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500만원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00만원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⑥ 지급 대상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보상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 그 포상금·보상금 등의 액수가 이 규칙에

	<u>따라 지급할 보상금액과 동일하</u> <u>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u> <u>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포</u> <u>상금·보상금 등의 액수가 이</u> <u>규칙에 따라 지급할 보상금액보</u> <u>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u> <u>하고 보상금액을 정하여야 한</u> <u>다.</u>
--	---